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시장가격 제출 공고

2025. 11. 12.(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1. 개요

- 양산품 제조설비에 대한 「모델별 시장가격 등 자료」를 제출받아, 가격 및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에 한해 사업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
- ※ 시장가격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양산품 설비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불가

2. 제출 대상

- (대상 설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 설비 또는 ▲ 포장, 운반 등 인력 보조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 또는 ▲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설비(위험물 보관함, 화재감지·경보설비에 한함)

<지원불가 설비>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 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기계·설비(KCs 또는 S마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설치 장소마다 개별 제품심사로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근 증빙을 1개만 제출

-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민간 거래 실적*이 5건 이상인 제조설비
- * 우리 공단 및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않은 거래

- (대상 업체) ▲ 국내 제조사, ▲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 해외 설비 수입업체(또는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내 법인

<자료제출 불가 업체>

[2차 거래 업체]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설비를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대리점 등

3. 제출 자료(참조 : 자료 작성 및 제출 가이드라인^[별첨1])

항목·모델별 1개 파일로 제출 [파일형식 준수 : ①번 Excel, ②~⑧번 PDF, ⑨번 ZIP]

□ 종합 정보

- ① (총괄표) 제출 내용을 Excel 서식에 맞게 작성^[별첨2] ※ '공급가액' 기준 작성
 -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는 50개(여러 회차에 걸쳐 제출 가능)
- ② (제출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 ③ (대리점 목록) (해당시) 「대리점(도매) 계약서 +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 ① 총괄표(Excel) 파일의 「03_대리점 목록」 시트에 해당 정보 입력 필수
 - ※ 거래실적이 제출된 대리점에 한해 목록 증빙 필요

□ 기본 정보(모델별)

- ④ (모델정보) 모델별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
- ⑤ (안전인증) 안전인증서(KCs 또는 S마크)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민간 거래 정보(모델별 각 5건)

- ⑥ (견적서) ^{(1)기본사양} ^{(2)옵션사양} ^{(3)주변기기} ^{(4)기타경비}로 구분된 세부 내역

- | |
|--|
| (1) 기본사양 : 해당 모델의 기본사양에 대한 가격 정보 |
| (2) 옵션사양 : 설비에 내장된 옵션 가격 정보(자사 소프트웨어 포함) |
| (3) 주변기기 : 설비 외 주변기기(별도 모델) 가격 정보(타사 소프트웨어 포함) |
| (4) 기타경비 : (1)~(3) 외 기타 소요 비용 ※ 해상 운송비(해외 수입) 등 포함 |

- ⑦ (계약서) 견적 대비 할인된 금액(해당시)을 반영한 최종 계약서
- ⑧ (실거래 증빙) 최종 계약 금액과 일치된 금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거래(이후 수정·취소시 허위·거짓으로 판단)
 -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 수입세금계산서 + (해당시) 해상 운송비 등 기타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 (수입 대행 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의 대리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
- ⑨ (XML 파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확인을 위해 XML 파일 별도 제출^[별첨3]

4. 제출 기간·방법 및 반려 등 안내

- (제출기간) '25. 11. 17.(월) 10시 ~ 11. 28.(금) 18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안전동행지원사업] → [시장가격 제출]
(공고·양식 다운로드)**

※ (참고) 해당 플랫폼은 '20분 이상 미사용 시' 세션이 자동 종료되므로 입력 내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종 '제출' 까지 완료해 주세요.

- (검토) 기간 내 제출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출 자료는 제출일 순으로 검토 예정이며, 연내 검토되지 못한 모델은 '26년 사업 참여가 지연될 수 있음

※ 연내 검토되지 못한 모델은 '26년 초부터 검토 재개 예정

- (반려) 제출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정·취소 불가) 『제출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취소 불가

【동일모델 중복 제출 금지】 동일 모델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초 건에 한해 검토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 처리

※ 별도의 보완요청·재제출 절차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자료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 (결과 안내) '25. 12. 31. 이내 홈페이지 또는 문자 등으로 일괄 안내 예정

5. 참여 제한

- 제출 자료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 참여 제한 및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향후 검증된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거짓으로 판단

6. '26년 사업운영(예정)

'26년 사업공고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사업 운영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운영) '26년부터는 검증된 모델에 한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가능
- '26년부터 『모델별 시장가격 제출·검증 제도』 상시 운영 예정

7.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FAQ 참조 **【별첨4】**
- 본 공고(별첨 1·2·3·4 포함) 내용을 우선 숙지
- (문의 전화) 1644-4555 또는 1644-4544

〈 공고·총괄표 양식 등 자료 게시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안전동행 지원사업(3개 분야 중 택1)] → [공지사항]

※ <참고> 서비스 개편으로 홈페이지 일시 중단 : '25. 11. 14.(금) 18:00 ~ 11. 17.(월) 09시

【별첨1】 자료작성 및 제출 가이드라인

항목·모델별 각 1개 파일로 제출(PDF의 경우 병합)

구분	제출 자료			업체별 필수 제출 자료		
	자료명	형식	세부 내용	국내 제조사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수입업체
종합 정보	① 총괄표	Excel (17개)	Excel 서식【별첨2】	●	●	●
	② 제출업체	PDF (1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	●	●
	③ 대리점 현황	PDF (1개)	대리점(도매) 계약서 +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해당시)	
기본 정보	④ 모델정보	PDF (모델별)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설비사진 必)	●	●	●
	⑤ 안전인증	PDF (모델별)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	●	●
민간 기거래 정보	⑥ 견적서	PDF (모델별)	5개 거래처에 대한 견적서	●	●	●
	⑦ 계약서	PDF (모델별)	5개 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	●	●
	⑧ 세금계산서	PDF (모델별)	5개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	●	●
	⑨ XML 파일	ZIP (모델별)	5개 거래처에 대한 XML 파일	●	●	●

【예시】 5개의 민간 기거래 실적으로 A, B, C, D, E 거래처가 있었다면,

- ⑥ <모델별 견적서> 거래처 A ~ E 순서대로 병합(PDF)
- ⑦ <모델별 계약서> 거래처 A ~ E 순서대로 병합(PDF)
- ⑧ <모델별 세금계산서> 거래처 A ~ E를 순서대로 병합(PDF)
- ⑨ <모델별 XML 파일> 원본 파일(파일명 등 수정 금지)을 ZIP 파일로 압축

<준수 사항>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제출
대리점 현황	☞ ⑥ ~ ⑨번 자료의 설비 구매자가 사용자(사업장)가 아닌, 대리점 등에 도매가로 납품한 경우, 해당 「대리점 계약서 +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증빙(여러 개인 경우 병합)
안전 인증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기계·설비에 한해 안전동행 지원 사업 참여 가능(KCs 또는 S마크에 한함)
견적서	☞ 아래 4개 가격 정보가 구분된 세부 내역 (1) 기본사양 : 해당 모델의 기본사양에 대한 가격 정보 (2) 옵션사양 : 설비에 내장된 옵션 가격 정보(자사 소프트웨어 포함) (3) 주변기기 : 설비 외 주변기기(별도 모델) 가격 정보(타사 소프트웨어 포함) (4) 기타경비 : (1)~(3) 외 기타 소요 비용 ※ 해상 운송비(해외 수입) 등 포함
계약서	☞ 견적 대비 할인된 금액(해당시)을 반영한 최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 최종 계약 금액과 일치된 금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거래(이후 수정·취소시 허위·거짓으로 판단) -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 수입세금계산서 + (해당시)해상운송비 등 기타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 (수입 대행 업체의 경우)해외 제조사와의 대리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
XML 파일【별첨3】	☞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확인을 위해 XML 파일을 모델별로 별도 제출 ※ 파일명 수정 금지, 모델별로 여러 개일 경우 ZIP으로 압축

1.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접속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2. 안전동행 지원사업 클릭 [3개 분야 중 택1(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음)]



3. 서약 및 시장가격 제출 [서약 내용 숙지 및 '동의' → 시장가격 제출(양식 다운로드)]



4. 시장가격 제출[숙지사항 & 기 제출 목록 확인]

안전동행 지원 모델별 시장가격 제출

<
공지사항
자료실
원가검토기관 소개
시장가격제출
FAQ
>

숙지 사항 확인

- 해당 플랫폼은 20분 이상 미사용시 세션이 자동 종료되므로 입력 내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 주세요
- 제출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제출 자료는 제출일 순으로 검토 예정이며, 연내 검토되지 못한 모델은 '26년 사업참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는 50회이며, 여러 회차에 걸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려) 제출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식 불일치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정 취소 불가) 제출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취소 불가
- (동일 모델 중복제출 금지) 동일 모델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초 건에 한해 검토 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 처리

7
시장가격 제출

기 제출 완료된 모델 현황 열람

기 제출 완료 목록 총 0건

번호	품목명	업체구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5.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연락처(휴대폰 번호) *

010

-

1234

-

5678

제출자 연락처(휴대폰 번호) *

010

-

6789

-

0123

8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제출자 이메일 주소

honggildong123@gmail.com

6. 종합 정보 파일 업로드(항목별 1개 파일, PDF의 경우 병합)

착안 사항 : 항목별 1개 파일만 업로드(파일형식 준수, ②~③은 PDF 병합)

- ① 【Excel】 총괄표(Excel 서식)
- ② 【PDF】 제출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③ 【PDF】 (해당시) 『대리점 계약서 +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종합정보】 파일 업로드

항목별 파일 첨부 9

1) 【Excel】 총괄표 ·{필수}

※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대수 50개
 ※ xls,xlsx 형식만 가능(배포된 엑셀 서식에 작성)

2) 【PDF】 제출업체 정보 ·{필수}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1개 파일로 병합)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3) 【PDF】 대리점 목록 증빙 {해당시}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1개 파일로 엑셀 목록 순서대로 병합)
 * (해당시) 『대리점 계약서 +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7. 모델 추가

‘모델추가’ 클릭 10

【모델 정보】 입력 현황

모델 추가

<input type="checkbox"/>	재정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카탈로그
--------------------------	--------	-----	-----	-----	------

8. 해당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 및 5건 거래 증빙 업로드

착안 사항 : 항목별 1개 파일만 업로드(파일형식 준수, ④~⑨은 PDF 병합)

- 4) 【PDF】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설비 사진 포함)
- 5) 【PDF】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KCs 또는 S마크에 한함)
- 6) 【PDF】 견적서(5건) ※ 엑셀에 기재된 A,B,C,D,E 거래처 순으로 병합
- 7) 【PDF】 계약서(5건) ※ 엑셀에 기재된 A,B,C,D,E 거래처 순으로 병합
- 8) 【PDF】 세금계산서(5건) ※ 엑셀에 기재된 A,B,C,D,E 거래처 + 작성일자 순으로 병합
(수입품의 경우, 수입 증빙 순서대로 병합 - 공고문 참조)
- 9) 【ZIP】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XML 파일(5건) ※ 파일명 수정 금지, zip 압축

【모델정보】 파일 업로드

모델명 *

11 모델명 입력
※ 엑셀(총괄표)에 기재된 모델명을 동일하게 입력

항목별 파일 첨부 **12**

4) 【PDF】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사진 포함) -【필수】 첨부파일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1개 파일로 병합)
* 카탈로그 또는 세부사양서

5) 【PDF】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KCs 또는 S마크) -【필수】 첨부파일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1개 파일로 병합)
*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KCs 또는 S마크에 한함)

6) 【PDF】 견적서 -【필수】 첨부파일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총괄표(엑셀)에 기재한 거래처 순서에 맞게 1개 파일로 병합)
* 견적서(5건)

7) 【PDF】 계약서 -【필수】 첨부파일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총괄표(엑셀)에 기재한 거래처 순서에 맞게 1개 파일로 병합)
* 계약서(5건)

8) 【PDF】 전자세금계산서(수입품의 경우, 수입 증빙) -【필수】 첨부파일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만 가능(총괄표(엑셀)에 기재한 거래처 순서에 맞게 1개 파일로 병합)
* 전자세금계산서(5건)
※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 수입세금계산서 + (해당시) 해상운송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의 대리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9) 【ZIP】 XML 파일 -【필수】 첨부파일

※ 100 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zip 형식만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 파일(파일명 등 수정 금지, zip 파일로 압축)

13

‘확인’ 클릭 취소 확인

9. 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 「위 8번 절차」에 따라 등록(최대 50개)하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클릭해야 입력 정보가 저장됨

【모델 정보】 입력 현황

모델 추가

모델 삭제

<input type="checkbox"/>	재정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카탈로그
--------------------------	--------	-----	-----	-----	------

«

<

>

»

'제출' 클릭

14

제출

〈 주요 착안 사항〉

- 해당 플랫폼은 20분 이상 미사용시 세션이 자동 종료되므로 입력 내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완료 바람
- 제출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제출 자료는 제출일 순으로 검토 예정이며, 연내 검토되지 못한 모델은 '26년 사업참여가 지연될 수 있음
-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는 50회이며, 여러 회차에 걸쳐 제출 가능
- **【반려】** 제출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식 불일치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려됨
 - 기본요건(대상 업체 및 설비)이 부적합한 경우, 거래정보 미검토
 - 기본 요건이 적합한 모델은 모델별로 적합/부적합 처리 예정
- **【수정 취소 불가】** 제출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취소 불가
- **【동일 모델 중복제출 금지】** 동일 모델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초 건에 한해 검토 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 처리

【별첨2】 『① 총괄표』 Excel 서식

- ◎ 『국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 1번 엑셀파일(국내제조사,외국인투자기업 용)으로 빈 셀 없이 작성
 - ※ 3개 시트로 구성(01_제출업체 정보, 02_설비 모델 및 거래 정보, 03_대리점 목록)
- ◎ 『수입 업체』 또는 『수입 대행 업체』의 경우,
 - ☞ 2번 엑셀파일(수입업체, 수입대행업체 용)으로 빈 셀 없이 작성
 - ※ 2개 시트로 구성(01_제출업체 정보, 02_설비 모델 및 거래 정보)

□ (1번 엑셀 파일) 국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법인

○ 01_자료제출 업체 정보(첫 번째 시트)

- A열(업체 유형 선택) : 국내 제조사, 해외 제조사의 국내법인 중 택1
- B열(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명을 ‘수기 입력’
- C열(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를 ‘-’ 없이 숫자만 10자리 입력
- D열(법인번호) : 법인번호를 ‘-’ 없이 숫자만 13자리 입력
- E~I열(담당자 정보) : 대표자 및 자료 작성자의 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 입력

○ 02_설비 모델 및 거래정보(두 번째 시트)

【설비 모델 정보】

- B열(설비 구분_중분류) : 목록에 있는 26개 설비유형 중 택1
- C열(설비 구분_소분류) :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 유형인지 ‘수기 입력’
 - ※ B열이 ‘기타’인 경우에는 설비유형을 반드시 수기 입력
- D열(모델명) : 안전인증 서류 또는 명판에 기재된 모델명과 일치되게 ‘수기 입력’
 - ※ 카탈로그, 안전인증, 견적·계약·세금계산서 등 서류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E열(규격/용량) : 해당 설비의 규격이나 용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 예를 들면, 사출기의 경우 ‘250TON’과 같이 기재
- F열(안전인증 종류) : 안전인증(KCs 또는 S마크),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중 택1
- G열(인증번호)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또는 S마크) 서류 상 인증번호
 - ※ (예시) 23-Ab3Ah-00121 ☞ ‘-’ 누락없이, 대소문자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

【해당 모델의 거래 정보】 ※ 모든 가격은 ‘공급가액(부가세제외)’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작성

- I열(판매 유형) : 설비 구매자가 『대리점(도매판매)』 또는 『사업장(소매판매)』 인지 택1

- J열(견적 일자) : 견적서 작성 일자를 서식에 맞게 입력【※ 작성 서식(예시) : 2024-01-27】
- L열(견적 단가기본사양) : 해당 판매·모델의 기본사양 단가(합계)를 ‘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M열(견적 단가_옵션사양) : 해당 판매·모델의 옵션사양 단가(합계)를 ‘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N열(견적 단가_주변기기) : 해당 판매·모델의 주변기기 단가(합계)를 ‘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O열(견적 단가_기타경비) : 해당 판매·모델의 기타경비 단가(합계)를 ‘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P열(견적 수량) : 해당 판매·모델의 견적 수량을 숫자만 기재
- R열(계약일) : 계약 일자를 서식에 맞게 입력【※ 작성 서식(예시) : 2024-01-27】
- S열(계약 단가) : 해당 판매·모델의 단가(세부사양 합계)를 ‘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견적금액 대비 할인된 경우, 할인된 최종 금액을 명시(세금신고 금액과 같아야 함)
- T열(계약 수량) : 해당 판매·모델의 계약 수량을 숫자만 기재
- W열(계산서 발행 수량) : 해당 판매·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수량(숫자만 기재)
 ※ 예를 들어, 1억 1천만원인 프레스를 1대 판매하였는데, 『계약금 3천만원 + 중도금 7천만원 + 잔금 4천만원(실수로 3천만원 초과 발행) + 수정발행 - 3천만원』인 경우, 4개로 입력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계약일자 순으로 PDF 병합하여 제출
- X열(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작성일자 입력【※ 작성 서식(예시) : 2024-01-27】

<착안 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모델 확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5-07-24		132,000,000	13,2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7	24	프레스(BEK-350A)		1	132,000,000	132,000,000	13,200,000	

발행일자
 x열에 작성일자 입력(발행일자 입력 금지)
 모델명(실거래 여부) 확인 가능해야

- Y열(공급자_사업자번호) :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 없이 숫자만 10자리 입력
 - Z열(공급자_사업장명) :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업체명을 ‘수기 입력’
 - AA열(공급받는자_사업자번호) :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 없이 숫자만 10자리 입력
 - AB열(공급받는자_사업장명) :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업체명을 ‘수기 입력’
 - AC열(세금신고_단가) : 해당 판매·모델의 세금신고 단가(합계)를 ‘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세금계산서를 여러 번에 걸쳐 발행한 경우, 합산 단가 입력
 - AD열(세금신고_수량) : 해당 판매·모델의 세금신고 수량을 숫자만 기재
- **03_대리점 목록(세 번째 시트) ※ 거래정보(2번 시트)에 포함된 대리점에 한해 기재**

- B열(대리점명) : 대리점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명을 ‘수기 입력’
- C열(사업자번호) : 대리점 사업자번호를 ‘-’ 없이 숫자만 10자리 입력
- D열(법인번호) : 대리점 법인번호를 ‘-’ 없이 숫자만 13자리 입력
- E열(대리점 계약일) : 대리점 계약서 상 계약일자 【※ 작성 서식(예시) : 2024-01-27】

□ (2번 엑셀 파일) 수입 업체 또는 수입 대행 업체

○ 01_자료제출 업체 정보(첫 번째 시트)

- A열(업체 유형 선택) : 직접 수입업체(사업장), 직접 수입업체(무역상) 수입 대행 업체 중 택1
- B열(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명을 ‘수기 입력’
- C열(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를 ‘-’ 없이 숫자만 10자리 입력
- D열(법인번호) : 법인번호를 ‘-’ 없이 숫자만 13자리 입력
- E~I열(담당자 정보) : 대표자 및 자료 작성자의 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 입력

○ 02_설비 모델 및 거래정보(두 번째 시트)

【설비 모델 정보】

- B열(설비 구분_중분류) : 목록에 있는 26개 설비유형 중 택1
- C열(설비 구분_소분류) :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 유형인지 ‘수기 입력’
※ B열이 ‘기타’인 경우에는 설비유형을 반드시 수기 입력
- D열(모델명) : 안전인증 서류 또는 명판에 기재된 모델명과 일치되게 ‘수기 입력’
※ 카탈로그, 안전인증, 견적·계약·세금계산서 등 서류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E열(규격/용량) : 해당 설비의 규격이나 용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예를 들면, 사출기의 경우 ‘250TON’과 같이 기재
- F열(안전인증 종류) : 안전인증(KCs 또는 S마크),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중 택1
- G열(인증번호)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또는 S마크) 서류 상 인증번호
※ (예시) 23-Ab3Ah-00121 ⇐ ‘-’ 누락없이, 대소문자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

【해당 모델의 거래 정보】 ※ 가격은 ‘현지통화·가격’ 기준으로 작성(원화로 작성 금지)

- I열(현지통화) : 수입신고필증 상 통화 단위 입력(선택) 【※ (예) USD, JPY, EUR, CNY 등】

- AC열(수입자_유형) : 수입자 유형 ❶ 설비 사용자(사업장), ❷ 무역상 중 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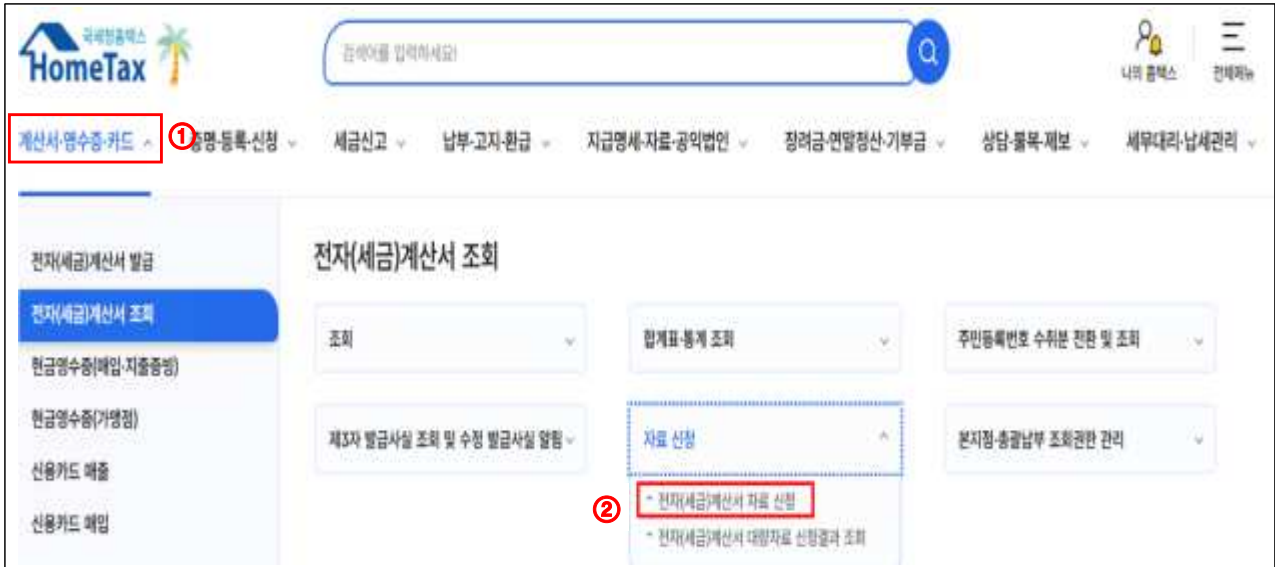
<착안 사항> 수입관련 정보(수입신고필증)

단위	종류	단위	종류	단위	종류	단위	종류
1000	(A)	1000	(A)	1000	(A)	1000	(A)
1000	(A)	1000	(A)	1000	(A)	1000	(A)

- AD열(수입_단가) : 해당 판매·모델의 수입 단가를 ‘현지 가격’ 으로 숫자만 기재
※ 세금계산서를 여러 번에 걸쳐 발행한 경우, 합산 단가 입력
- AE열(수입_수량) : 해당 판매·모델의 수입 수량을 숫자만 기재
- AF열(환율) : 수입신고필증 상 환율을 소수점까지 모두 입력
- AH열(운임료) : 수입신고필증 상 운임료를 숫자만 입력
- AI열(보험료) : 수입신고필증 상 보험료를 숫자만 입력
- AJ열(그 외 경비)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 그 외 소요비용(합계) 증빙·입력
※ ‘운임료, 보험료’는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제외 (예시) 해상운송 관련 세금계산서 中 OCEAN FREIGHT CHARGE, B.A.F CHARGE 등은 운송비이고, INSUARANCE FEE는 보험료로 수입 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료·보험료와 중복 ◀ ‘그 외 경비’는 중복비용 제외

【별첨3】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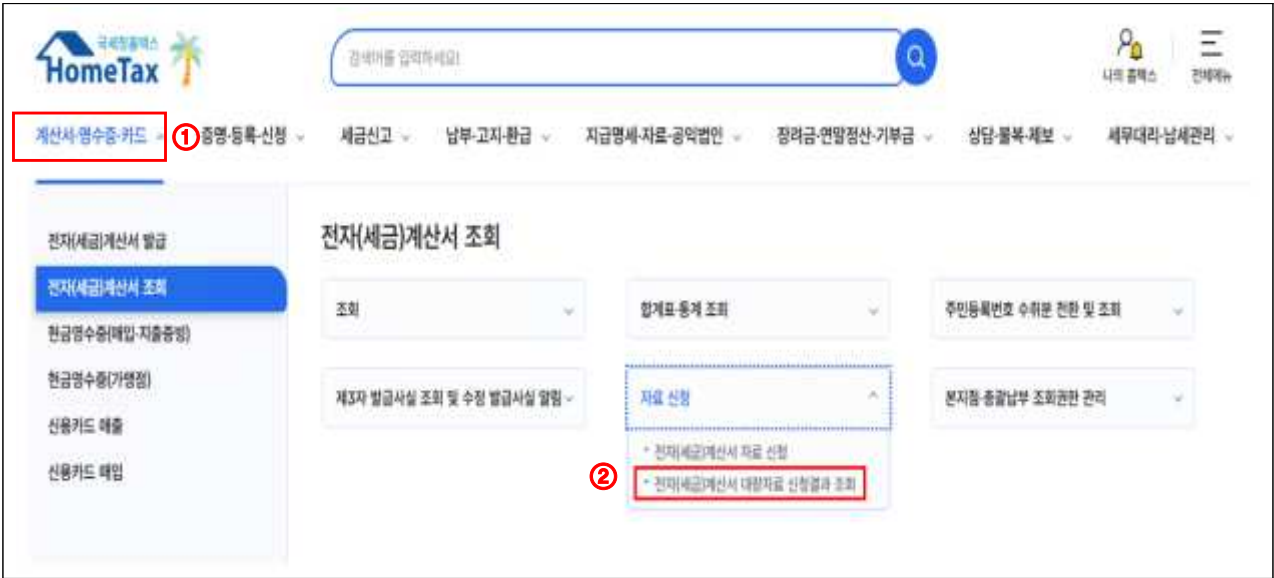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5. 자료내려받기

자료내려받기 ✕

형식	파일명	건수	자료받기
XML	20250751000000457012542520250710202507024100...	1	내려받기

1 총1건(1/1)

닫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6. 모델별 XML(전자세금계산서 원본) 파일 ZIP 압축

○ 모델별로 거래처 5개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원본) XML 파일들’을 1개 파일로 압축(ZIP)하여 제출

7. XML 다운로드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26 → 1번(국세청 홈텍스 상담)

【별첨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업참여 관련 〉

【Q1-1】 가격 등 검증이 안된 양산품 모델은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집행에 있어 양산품의 경우, 일관된 가격기준 적용이 필요하므로 「시장가격 제출·검증절차」를 통해 모델별 적정가격 및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1-2】 이번 가격조사로 검증된 설비는 2026년 사업참여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무조건 사업참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 설비 기준은 향후 『해당연도 사업공고』에서 정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 설비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비 기준 외 다른 요건들도 모두 부합해야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Q1-3】 이번 가격조사로 내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꽤 많은 국내·외 모델이 접수될 것 같은데, 내년 사업 시작 전까지 공단 검증이 가능한가요?

A. 접수 물량이 많을 경우, 연내 모든 모델에 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Q1-4】 그럼 연내 검토가 안된 물량은 내년 접수가 불가능하나요?

A. 아닙니다.

모델별 제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연내 검토되지 못한 모델은 '26년 초부터 검토 재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제출 모델들은 내년 사업 참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5】 이번에 가격 제출하지 않은 모델은 영구적으로 사업참여가 어렵나요?

A. 아닙니다.

'26년부터 『모델별 시장가격 제출·검증 제도』를 상시 운영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출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순차적으로 검증한 뒤,

검증이 완료된 모델에 한해 접수 가능하도록 사업운영 예정입니다.

[Q1-6] 앞으로 양산품 제조설비는 KCs 또는 S마크 인증을 받은 설비만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설비로서 KCs 또는 S마크 인증을 받은 설비만 참여 가능합니다.

[Q1-7] KCs, S마크 외 해외 안전 기준 등도 허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기계·설비로써, KCs 또는 S마크에 해당하는 모델에 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 검증이 안된 양산품 제조설비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외 안전보건 공단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정지원사업에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각 사업별로 『해당연도 사업 공고』에서 정한 뒤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동일 모델에 대한 가격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정입니다.

[Q1-9] 내년부터는 포장, 운반 등 인력 보조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해 단독지원도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내년 사업 대상 설비는 현 시점에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는 『2026년 사업공고』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산업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 설비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25년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기준

인력 보조작업에 대한 자동화 설비의 단독 신청은 불가. 단,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와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

〈Q2. 자료 작성 및 제출 관련〉

【Q2-1】 계약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나눠 발행한 경우 파일 병합 방법은?

A.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및 작성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예시> 모델별 1개 파일로 PDF 병합

Step 1

제출 모델에 대해 거래처 & 작성일자 순으로 파일명 정리

거래처 순	모델	거래처	서류	작성일자	작성일자 순
↓	모델	거래처	서류	작성일자	↓
	(BEC-1925)_A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40517.jpg	↓
	(BEC-1925)_A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40720.jpg	↓
	(BEC-1925)_A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40829.jpg	↓
	(BEC-1925)_B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30302.jpg	↓
	(BEC-1925)_B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30511.jpg	↓
	(BEC-1925)_C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50125.jpg	↓
	(BEC-1925)_D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40420.jpg	↓
	(BEC-1925)_D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40808.jpg	↓
	(BEC-1925)_E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_250421.jpg	↓

본 예시와 같이
나머지 항목도 '모델별로'
거래처 순서가 일치되도록 병합

Step 2

PDF 병합 프로그램 열고, 『PDF 병합』 클릭

Step 3

정리된 파일을 통째로 드래그 & 드롭

Step 4

거래처 - 작성일자 순서에 맞게
1개 파일로 병합되었는지
반드시 Check!!

- 21 -

【Q2-2】 기존 신청 또는 지급 완료된 설비에 대해서도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귀사에서 제작·수입하는 설비를 향후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자하는 모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2-3】 이번에 검증 완료된 모델에 대한 가격정보를 추후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A. 검증완료 모델에 대한 정보변경 신청은 추후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불가합니다.

【Q2-4】 항목별 파일 형식과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A. 국내·외 다수 모델에 폭발적인 접수가 예상됨에 따라, 검증 절차를 일원화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Q2-5】 여러 모델을 제출하는 경우, 1개 모델만이라도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면 함께 제출한 모델 전체가 반려되나요?

A. 아니요. 자료 검증은 ‘모델별’ 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상 업체·설비 등 기본 요건에 맞지 않은 업체 또는 모델들은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2-6】 엑셀 파일이 두 개 인데 모두 다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둘 중 해당되는 파일 1개만 작성

① 국내 거래에 대한 엑셀 서식, ② 수입품에 대한 엑셀 서식으로 구분 국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은 ‘국내 거래용’ 엑셀파일로 수입업체(수입대행업체)는 ‘수입용’ 엑셀파일로 작성바랍니다.

【Q2-7】 증빙자료는 정확한데, 엑셀에 오기입한 경우 제출이 반려되나요?

A. 네. 반려됩니다.

폭주하는 제출 물량을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검토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적합·부적합 판단만 진행 하오니,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한 서식 규칙에 맞게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Q2-8】 대리점에 납품한 경우도 거래 실적에 해당하나요?

A. 네. ^국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에 한해 해당합니다.

다만, 그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리점(도매) 계약서 + 대리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② 대리점 현황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 엑셀파일(총괄표)의 첫번째 시트에 해당 거래가 대리점(도매) 또는 소매 거래인지 입력하고, 두번째 시트 양식에 따라 대리점(들) 정보를 입력

【Q2-9】 제출 자료를 공단에서 검증할 때,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요청 절차가 있나요?

A. 아니요.

본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반려됩니다.

다만, 반려되었더라도 '26년 초에 예정인 「시장가격 제출·검증 제도」 운영 시 재제출 가능합니다.

【Q2-10】 제출 모델에 대한 검증 완료 또는 반려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25년 12월 31일 이내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열람 또는 문자 등을 안내 예정

【Q2-11】 우리 회사는 많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드시 일괄 제출해야 하나요? 순차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인해 불이익이 있기 때문

A. 여러 번 나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엑셀파일은 최대 50개 모델까지 입력가능하므로 그 이상 모델을 보유한 경우, 나눠서 제출 바랍니다. 다만,

- 제출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취소가 불가함.

- 동일 모델을 중복 제출하는 경우 최초 건에 한해 검토 → 나머지는 모두 반려 처리

※ 별도의 보완요청 절차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자료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Q2-12】 제조·수입업체 외 대리점 등 판매업체은 자료 제출이 불가한가요?

A. 불가합니다.

모델별 시장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해외 설비 수입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만 시장가격 등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Q2-13】 제조·수입업체에서 사업장에 판매했던 거래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거래(즉, 민간 기거래 실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반드시 설비 구매자로부터 우리 공단을 포함한 모든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순수한 민간

거래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조·수입업체에서 판매 영업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홍보하고 정부자금 신청 및 수행 절차 등을 직접 돕고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판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14】 가격검증이 완료된 이후 제출된 거래가 정부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허위·거짓 자료 제출로 업체·설비 참여 제한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모델에 대해 이미 결정·지급된 사업장 또한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15】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이란?

A.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내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위 법 조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16】 『해외 제조사의 국내법인』은 거래실적 증빙으로 ‘수입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내 거래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17】 『해외 설비 수입(대행) 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① 수입신고필증 및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입자 또는 ② 해당 수입 건을 대행한 업체(무역상, 국내 판매점 등)

【Q2-18】 해외 설비를 『직접 수입』한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제조사 - 수입자』간 작성한 ① Offer Sheet(주문서 또는 견적서), ② 계약서 및 세관에서 발행한 ③ 수입신고필증,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19】 해외 설비를 『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한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A. 『대행업체 - 수입자』 간 작성한 ① Offer Sheet(주문서 또는 견적서), ② 계약서, ③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관에서 발행한 ④ 수입신고필증, ⑤ 수입세금계산서, (해당시) ⑥ 해상운송비 등 기타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 대행 업체의 경우) ⑦ 해외 제조사와의 대리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거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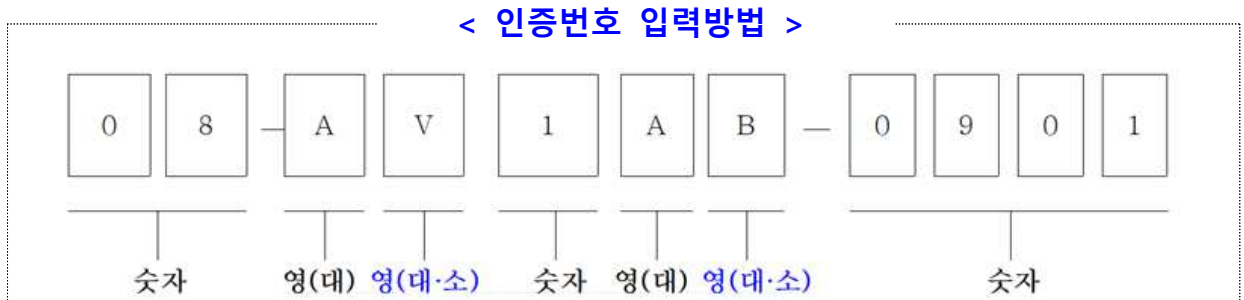
- A.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확정신고는 올해 1월~6월 세금계산서 작성분에 해당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5년 6월 30일」 이후인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착안사항> 제출된 거래에 대해 이후 수정·취소 등 확인시 허위·거짓으로 판단하여, 자료 제출업체·모델 참여제한, 해당 모델로 보조금 지급완료된 모든 사업장 결정 취소, 환수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예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구분	과세기간 (작성일자 기준)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4월 25일(1~3월분)	7월 25일(1~6월 작성분)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10월 25일(7~9월분)	다음 연도 1월 25일 (전년도 7~12월 작성분)

【Q2-21】 엑셀에 안전인증 번호 입력 방법

- A. 인증서류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아래와 같이 숫자·하이픈(-)·대소문자 등 정확히 입력



【Q2-22】 전자세금계산서 XML 파일은 무엇인가요?

- A.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원본 진위와 무결성(사실 확인)을 증명하는 공식 전자 문서입니다. ※ 【별첨3】 XML 다운로드 방법 참조

【Q2-23】 XML 파일이 여러 개일 때 제출 방법

A. 모델별로 압축(파일형식 : ZIP)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운받은 XML의 파일명은 절대 수정 금지

【Q2-24】 ⑨번 XML 파일을 제출하면 ⑧번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① ~ ⑨ 항목별로 모두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2-25】 기본사양 가격이란?

A. 특정 모델을 생산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설비 사양으로써,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사양에 대한 가격입니다.

【Q2-26】 옵션사양과 주변기기의 차이

A. 옵션사양은 특정 모델에 대해 구매자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모델 안에 추가로 장착되는 사양을 말하여, 제조사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주변기기는 원료공급기, 취출로봇, 호퍼로더 등 특정 설비 모델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별도의 설비를 말합니다.

【Q2-27】 주변기기도 별도 모델로서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A. 공고문 상 대상설비 가·나·다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2-28】 견적서에 기본사양, 옵션사양, 주변기기 등 구분이 모호하여 모두 기본 사양 또는 옵션사양으로 반영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제출 자료가 허위·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사양별 특성 구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Q2-29】 엑셀서식을 입력할 때, 수입품의 경우, 금액의 단위를 현지통화로 하나요? 원화로 하나요?

A. 수입품의 경우, 『총괄표(수입설비용)』 엑셀파일 내 거래정보 입력시 현지통화 통화코드를 입력하고, 해당 설비의 현지 가격을 입력.

예를 들어, 일본 제조사의 양산품 설비를 10,000,000엔의 가격으로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통화코드는 JPY』로 선택하고, 『설비 가격은 10,000,000(현지가격)』으로 입력 ※ [첨부2_엑셀 서식 입력방법] 참조

【Q2-30】 할인으로 인해 견적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이 상이한데 괜찮나요?

A. 견적 대비 할인을 반영한 최종 계약 금액이 상이한 경우, 계약 금액은 견적과 상이하더라도 할인을 반영한 최종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최종(할인이 반영된) 계약금액은 세금계산서(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현지가격)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